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55 발의연월일: 2021. 9. 1.

발 의 자: 박영순·백혜련·홍정민

김교흥 • 윤건영 • 윤상현

장철민 · 황운하 · 강득구

서영교 · 김민철 · 김정호

박성준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노후 주거지 재생 및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였으나,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로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·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 및 제54조).

법률 제 호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4항 전단 중 "매각·대부 또는 양여"를 "처분 또는 대부"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"으로, "것으로 한정한다"를 "재산으로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매각하는"을 "처분하는"으로 한다.

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국유재산・공유재산 등의	제30조(국유재산・공유재산 등의
처분 등) ① ~ ③ (생 략)	처분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
	<u>♦</u>
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	4
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	
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	
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	
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	
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국유재	
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	
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	
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	
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	
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	<u>처</u>
수의계약으로 <u>매각·대부 또는</u>	<u>분 또는 대부</u> .
<u>양여</u>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	
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	
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	
할 수 있으며,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	
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.	.
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<u>기획재</u>	⑤ <u>해당 재</u>
<u>정부장관</u> 과 협의를 거친 <u>것으</u>	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-

로 한정한다.

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<u>매각하는</u>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.

⑦ ~ ⑨ (생 략)

제54조(혁신지구에 대한 특례) 제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<u>재산으로 한다</u> .	
6	
<u>처분하는</u>	
⑦ ~ ⑨ (현행과 같음)	
세54조(혁신지구에 대한 특례)	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
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	
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	
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	
필요한 경우에는 「도시공원	
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	
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	
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	
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	

있다.